



KFA
Korea Football
Association

K리그2, K3리그

승강 규정

2026. 1. 27 제정

Play ON



제개정연혁

- 2026년 1월 27일 제정

K리그2, K3리그 승강 규정(안)

제정 2026. 1. 27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(이하“연맹”)에서 운영하는 K리그2와 대한축구협회(이하“협회”)에서 운영하는 K3리그 간 승강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K리그2 신규 참가팀 패스트 트랙 가입)

- ① “연맹”은 K리그2에 신규 참가팀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없다. 단,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국내 200대 기업 중 하나의 기업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외 기업이 프로팀을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 가입을 받을 수 있다.
- ② 국내 200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자산총액 기준으로 발표하는



공시대상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해외 기업의 경우 자산 기준 1조원 이상의 기업에 한한다.

④ 상기 ①항 ~ ③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K3, K4리그 소속 클럽도 패스트 트랙으로 K리그2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3조(승격과 강등)

① K리그2와 K3리그의 참가팀수와 무관하게 양 리그 간 승강제는 2026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2027년도부터 운영한다.

② K3리그 정규리그 최종순위 1위 클럽과 K리그2 정규리그 최종순위 최하위 클럽은 승강결정전을 통해 승강여부를 결정한다.

③ K3리그 정규리그 최종순위 1위 클럽이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K리그2 클럽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승강결정전 진출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당해 연도에는 양 리그 간 승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.

④ K리그1, K리그2 소속팀의 "B"팀은 K3리그 정규리그에서 1위를 하더라도 K리그2로 승격할 수 없다. 단, "B"팀이 K3리그 정규리그 1위를 하였을 경우, K3리그 정규리그 2위팀이 승강결정전에 진출 할 수 있다.

제4조(승강결정전)

① 제3조에 따라 승강결정전을 개최할 경우 단판으로 개최하며, 정규시간에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장전 - 승부차기 순서에 따라 승강 여부를 최종 결



정한다.

② 경기 일정은 K리그2 최종전 일자와 K3리그 최종전 일자 중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리그 최종전 다음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경기일로 하며, 국내외 축구리그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회와 연맹이 협의하여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승강결정전은 K리그2 소속팀이 홈경기로 개최한다. 단, 부득이 K리그2 소속팀이 홈 경기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경기 개최권을 K3리그 소속팀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④ 상기 ②항과 ③항에도 불구하고 양 팀이 경기 개최 일정과 관련하여 상호 문제제기를 할 경우, “협회”와 “연맹”은 양팀과 조정 절차를 거쳐 경기 개최 일정 및 장소를 최종 확정한다.

⑤ 각 리그에서 발생한 경고와 퇴장으로 인한 징계는 승강결정전에 연계 적용하지 않는다. 단, “협회”의 공정위원회 및 “연맹”의 상벌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(국내경기에 대한 출전정지,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징계)는 승강결정전에도 유효하다.

⑥ 승강결정전의 출전선수는 최대 20명(선발 11명, 교체대상 9명)이며 정규시간내 선수 교체는 최대 3회이내, 5명까지 할 수 있다. 단, 하프타임 교체는 교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, 연장전 시행시 교체횟수 1회, 교체인원 1명이 증대 된다. 또한, 정규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선수 교체 횟수 및 교체인원수는 연장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.



- ⑦ 외국인 선수의 출전에 관한 사항은 K리그2 규정과 K3리그 규정 중 출전 가능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적용한다.
- ⑧ 승강결정전은 각 리그에서 적용하고 있는 저연령 선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⑨ 각 팀은 최대 1명의 뇌진탕 교체를 할 수 있으며, 이외 뇌진탕 교체에 대한 사항 및 경기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IFAB 경기규칙 최신판을 따른다.

제5조(승강에 따른 리그 가입비 및 연회비)

- ① K3리그에서 K리그2로 승격한 클럽은 K리그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② K리그2에서 K3리그로 강등된 클럽은 K3·K4리그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③ 과거에 K리그1, K리그2, 또는 K3, K4리그에 각각 소속되어 가입비를 납부한 클럽은 해당 리그의 가입비를 중복해서 납부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K리그2, K3리그 승강제 운영에 따른 프로 "B"팀 승강규정)

- ① K3리그에 "B"팀을 운영중인 K리그2 소속팀이 K3리그로 강등되었을 경우, 해당 "B"팀은 K3리그 성적과 무관하게 K4리그로 강등된다.
- ② K4리그에 "B"팀을 운영중인 K리그2 소속팀이 K3리그로 강등되었을 경우, 해당 "B"팀은 K4리그 성적과 무관하게 K3리그로 승격할 수 없다.



③ 상기 ①항과 ②항에 따라 프로 “B”팀이 소속리그에서 강제 승강 조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리그는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(K3클럽에 대한 K리그2 클럽라이선스 유예)

① “연맹”에 가입 이력이 없는 K3클럽은 아래와 같은 유예 조건으로 K리그2 클럽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다.

가) 유스팀 운영

신청시	프로 1년차	프로 2년차	비고
U12, U15, U18 최소 1팀 운영	U12, U15, U18 최소 2팀 운영	U10,U12,U15,U18 모두 운영	유스 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 제출(3~7년)

나) 사무국 운영

신청시	프로 1년차	비고
12명 이상	20명 이상	- 6개월 이상 계약직/인턴 포함 - 임원(대표이사, 단장 등)은 2030년까지 인정 - 파견 공무원 : 사무국 직제 편성시 인정 - 구단이 직접 고용한 시설관리 업무자 인정 - 테크니컬 디렉터, 유스 디렉터, 스카우터 등 인정

※ 프로 2년차 클럽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‘P.02 사무국 직원’ 기준에 명시된 해당 연도 사무국 인원수를 충족해야 한다.



다) 지도자

신청시	프로 1년차	프로 2년차	비고
감독 : A급이상 코치 : B급이상 GK : Level 2이상	감독 : A급이상 코치 : B급이상 GK : Level 2이상	감독 : P급 코치 : A급이상 GK : Level 3이상	승격후 2년 이내 P급 자격증 보유 (3년차 라이선스 심사 전까지)

② K3리그에서 K리그2로 승격한 팀이 K3리그로 강등된 후 K리그2로 재승격할 경우 유예조건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고, 강등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.

- 예시 : K리그2로 승격한 팀이 2년차까지 운영 후 K3리그로 강등된 후 K리그2로 재승격할 경우 가)항의 유스팀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, 나)항 및 다)항도 “연맹”의 K리그2 라이선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
③ 이외의 사항은 “연맹”의 K리그2 클럽라이선스 규정을 따른다.
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본 규정은 “연맹”과 “협회” 이사회 모두 승인 후 2026년도 시즌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금)

① “협회”는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K리그2와 K3리그 간 승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, 승강제 시행 최초 3년간 승격팀과 강등팀에게 아래의 운영비를 팀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.

- 2026년 성적기준, 2027년 강등팀 : 10억원 / 승격팀 : 5억원
- 2027년 성적기준, 2028년 강등팀 : 10억원 / 승격팀 : 5억원
- 2028년 성적기준, 2029년 강등팀 : 10억원 / 승격팀 : 5억원

② 또한, “협회”는 본 승강규정에 의거하여 K리그2와 K3리그 간 승강이 발생한 연도(최초 3년간, 2027년~2029년)에 한해 “연맹”에 리그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한다.

제3조(규정 관리 및 개정)

본 규정은 “협회”에서 관리하되,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연맹”과 “협회” 이사회 모두 승인 후 개정할 수 있다.

제4조(기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협회”와 “연맹”이 별도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.